
Orion Engineered Carbons Group
투자자 관계 및 기업 의사소통 정책

I. 서문

공개 기업인 Orion Engineered Carbons S.A.(이하 자회사와 함께 “기업”)은 자재 정보에 관한 모든 의사소통이 투명하고 정확하며 사실적이고 일관적인,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이하 “SEC”)와 뉴욕 증권거래소(이하 “NYSE”)의 요건을 포함하여 기업이 대상이되는 다양한 규제 기관의 적용되는 법적 요건 및 미국의 적용되는 안보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. 모든 의사소통은 일관적이어야 하며,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항상 피하고 투자 커뮤니티 내 모든 당사자가 공정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본 투자자 관계 및 기업 의사소통 정책(이하 “정책”)의 목표는 공정공시규정(이하 “공정공시규정”)과 NYSE 상장 기업 공개 요건 및 비일반 회계기준 재무 조치 사용 조건인 G규정(이하 “G규정”)의 준수를 진흥하기 위한 것입니다.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상당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일부 경우에는 특정 이사, 관리자, 직원 및 독립 계약업체에 개별적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II. 요약: 모든 개인이 관찰해야 하는 일반 원칙

쉽게 말하자면, 본 정책은 기업의 모든 이사, 관리자, 직원과 독립 계약업체(이하 집합적으로 “개인”)에게 적용됩니다.

본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:

- 기업 외부의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일은 공인 대변인 (아래 VI 항목에서 정의)이 독점적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공인 대변인 또는 위원회가 권한을 받아 전달합니다.
- 개인은 기업 외부의 누구에게라도 자료, 비공개 정보를 논의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(아래 VIII 항목에서 확인). 투자 커뮤니티의 구성원과 접촉하는 모든 개인은 투자자 관계 이사에 즉시 모든 질문을 전달해야 합니다(아래 XVI 항목에서 확인).
- 기업에 대한 비공개 정보 및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개인은 CEO, CFO 또는 법무 자문위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(아래 VIII 항목에서 확인).
- 어떠한 형식 또는 매체를 통해 기업이 직접 또는 기업을 대신하여 발행되는 보도 자료는 반드시 정보 공개 위원회, 법무 자문위원, 감사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(아래 IX 항목에서 확인).
- 분기별 수익 정보는 반드시 아래 X항목에 기재된 대로 공개되어야 합니다.
- 수익 발표에 앞서 기업은 반드시 투자 커뮤니티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“침묵 기간(quiet period)”를 관찰해야 합니다(아래 XV 항목에서 확인).

Orion Engineered Carbons Group

투자자 관계 및 기업 의사소통 정책

- 전망에 대한 정보 및 안내는 아래 XIV 항목에 기재된 바를 따라서만 공개되어야 합니다.
- 기업은 기업 외부의 어떠한 수단으로도 기업 외부 인물에 애널리스트 보고서 및 모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(아래 XVII 항목 확인).
- 투자 커뮤니티 회의 및 컨퍼런스, 트레이드쇼 프레젠테이션, 로드쇼 및 기타 행사는 반드시 XII 하에 따라 공정공시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수행합니다.
- 공정공시규정을 준수하는 동안, 기업이 특정 인물에게 자료 비공개 정보를 공개한 경우, 계획적 정보공개일 경우 동시에 공개적으로 이를 알리거나, 비계획적 정보공개일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개적으로 알립니다(아래 IV 항목 확인).
- 본 정책에 관련한 모든 질문은 투자자 관계 이사 및/혹은 법무 자문위원의 말을 참고합니다(아래 XVIII 참고).
- 공정공시규정 위반은 SEC 시행 조치의 대상이 되며, 여기에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한 행정 및 민사 소송이 포함됩니다.

III. 정책 보고서

본 정책은 본 정책의 내용에 따르거나 개인의 의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, 어떠한 개인도 자료, 비공개 정보와 어느 방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내부 자료 및 개발 사항을 기업과 제휴 관계가 아닌 타인(가족, 친척 및 친구 등)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고지합니다.

본 정책이 다루는 사항: 기업의 연간 및 분기별 보고서 내용, SEC 보관 문서, 제품 관련 뉴스 보도 및 수익 보도, 기업과 애널리스트의 의사소통 사항, 투자자 및 뉴스 미디어, 최고 관리직 연설 및 발표, 기업 웹사이트, 소셜 미디어 채널 및 인트라넷에 포함된 정보 공개, 자료에 관한 논의, 타인이 대화를 들을 수도 있는 공공 장소 및 준공공 장소에서의 미공개 정보에 관한 대화 등을 포함한 정보 공개.

또한, 어떠한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, 기업의 제품이나 자회사에 대해 논의하는 인트라넷 채팅방, 게시판, 블로그 및 기타 유사 소셜 미디어에 자료 미공개 정보를 호스트, 링크하거나 이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. 이 경우 이러한 개인의 의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본 정책에 따라 투자자 관계 이사의 사전 검토에 따르는 경우만 제외합니다.

본 정책의 어떤 내용도 개인이 적절한 비기업(non-Company) 기관에 비상 사태를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,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.

Orion Engineered Carbons Group

투자자 관계 및 기업 의사소통 정책

본 정책은 1)기업의 공정공시규정 위반에 관한 자료 미공개 정보의 선택적 정보공개를 금지하며 2)이러한 부적절한 선택적 정보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

본 정책의 목적에 따라, “자료 정보”에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증권을 매수, 매도 및 보유하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.

“미공개 정보”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와 이미 공개된 후라도 대중이 널리 인식하기까지 공개 후 합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때까지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(예: SEC 기록, 보도 자료,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컨퍼런스 콜).

IV. 공정공시규정

공정공시규정은 기업 또는 기업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인물이 구체적인 특정 인물(브로커, 딜러, 애널리스트, 증권 보유자/주주 포함)에게 자료 미공개 정보를 공개할 때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중에게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요구합니다:

- 동시에(계획적 공개일 경우), 혹은
- 즉시 (비계획적 공개일 경우)

이러한 자료 미공개 정보의 대중 정보공개는 또다른 공정공시규정을 준수하는 방법 또는 8-K 서식의 보고서의 “미치” 및 기록, 보도 자료 발표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. 대중 정보공개가 컨퍼런스 콜 및/혹은 웹캐스트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, 해당 컨퍼런스 콜 및/혹은 웹캐스트는 반드시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여 컨퍼런스 콜/웹캐스트의 적절한 사전 공지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.

공정공시규정은 특히 다음 인물 그룹에게 선택적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:

- 브로커, 딜러, 투자 애널리스트를 포함하여 이들과 함께 일하는 인물,
- 투자 자문가, 특정 기관 투자 관리자 및 그 협력자,
- 투자 기업 및 관련 인물, 및
- 공개된 정보에 기반하여 증권 보유자가 증권을 매수 및 매도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의 기업 증권 보유자.

상기 언급된 각 인물은 이하 “공정공시규정 대상 인물”이라고 표기합니다. 본 정책에 해당되는 인물이 확실치 않다면 (i)해당된다고 가정하거나, (ii)정보공개 위원회(아래 참고) 구성원에게 연락하여 안내를 부탁드립니다.

공정공시규정은 다음과 같은 인물과의 의사소통은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:

- 기업 임직원(직원이 주주인 경우에도),

Orion Engineered Carbons Group
투자자 관계 및 기업 의사소통 정책

- 직업적 책임 및 계약을 통해 기업에서의 신뢰 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갖는 인물(예: 변호사, 회계사, 투자 은행원), 또한
- 기업과의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인물(서면 또는 구두 모두).

공정공시규정이 상기 개인과의 의사소통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더라도, 이러한 개인/단체와의 의사소통 시에도 공정공시규정을 따르는 것이 기업의 정책입니다.

공정공시규정은 또한 자본 조달이 목적인 발행인과의 등록 공모 증자와 “관련되어” 진행되는 의사소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(예: 공개 공모와 관련된 채권인수인).